

北韓의 林政概況(下)

徐 承 鎮 / 산림청 과장
(동경연 파견관)

〈전호에서 계속〉

이와 같은 林政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1958년 4월에는 중앙의 임업행정 조직을 전재사업부 산하의 임업성으로 승격시켜 강화하였으며, 전인민적 운동전개를 통한 노력동원으로 植樹 및 사방사업을 추진코자 1956년 2월에는 「식수조림 사업 및 산림관리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관하여」를 내각에서 결정 시달하였다.

북한은 이 시기에 無立木地에 대한 조림과 황폐지에 대한 사방사업을 기본적으로 완료할 목표로 전후복구 3개년 계획기간 (1954~56) 중에는 189천ha를, 그리고 5개년계획기간 (1957~61)에는 500천ha의 많은 조림목표량을 책정하였다. 사방사업 목표량은 언급이 없으나, 1958년 5월 「동해안지구의 치산치수사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할 데 관하여」가 내각 결정으로 시달된 것으로 보아 함경남도 지역의 황폐산지에 대하여 산지사방, 야계사방, 사방조림, 하천정리 등의 종합적이며 대대적인 治山治水事業이 休戰直後부터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조림 및 사방사업의 본격적인 추진과 더불어 전후복구사업 및 석탄생산 증대에 따라 소요량이 증대되는 원목 및 제재 목 생산에도 역점을 두어 3개년계획기간의 최종년도인 1956년까지는 원목생산량을

230만m³ (1949년 대비 1.4배)로 확대할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어서 5개년계획기간에는 1961년까지 원목생산을 290만m³, 제재목 생산을 122만m³으로 확대할 것을 목표로 제시하면서 간목수요 증가에 대처한 목재의 소비절약과 시멘트 등 대체재의 확대 사용을 촉구하였다.

4) 제 4 단계 : 社會主義 制度建設期 (1960~70)

이 시기에 북한은 경제계획의 기본과업을 중공업발전, 경공업·농업의 동시적 발전, 전국적 기술혁신, 문화혁명과 국민생활의 향상, 국방과 경제의 병진에 두었다.

임정에 있어서는 1950년대에 이어 군중적 운동전개를 통하여 조림 및 치산치수사업과 더불어 송충이 및 산불 등 산림피해 근절을 위한 산림보호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이 기간에 추진된 제 1차 7개년계획기간 (1961~1967)에는 조림목표량을 800천ha로 정하고 「쓸모없는 임지들을 경제적으로 유용한 산림으로 개조」한다는 목적 아래 펠프제지림, 油脂林, 산과실림의 광범위한 조성과 아울러 수원함양림, 사방림, 방풍림 등의 조성을 병행 추진하였다.

따라서 북한의 발표를 그대로 본다면, 이 때부터 樹種更新造林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처럼 보이나, 사방림, 방풍림 등의 조

성이 병행된 것을 보면 이 시기에도 황폐산지에 대한 砂防造林이 상당량 계속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은 목재의 최대한 절약과 종합적 이용에 역점을 두었고, 1964년 6월에 산림과학연구원이 승격 발족되어 임업연구 또한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 시기에 일반적인 목재수요의 증가와 함께 제1차 7개년계획상의 석탄생산 증대계획 ('67년에 2,500만톤: '60년 대비 2.4배) 따라 늘어나는 생목수요로 인하여 목재의 부족이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생목의 소비절약대책의 마련과 함께 원목과 製材實收率을 높여 나갈 것을 촉구하였으며, 목재자원의 종합적 이용을 도모코자 제재 폐재 등을 이용한 목산판 및 목섬유판의 생산량 증대를 도모하였다.

5) 제5단계 : 社會主義 制度安定期 (1971~76)

북한은 이 시기에 기본과업을 사회주의的, 技術的 토대의 견고화, 산업시설 근대화, 기술혁명 촉진, 노동자를 힘든 노동에서 해방이라는 데 두었다.

林政에 있어서는 전군중적 운동을 통한 경제령의 확대, 순환식 벌채방법의 전국적 시행 및 원목생산 증대, 임업기계수준의 제고, 임산화학 공업의 발전 및 원목의 종합적 이용도 제고에 중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70년대초부터 북한경제 자체가 더욱 어려워지기 시작했을 뿐만아니라 중앙의 산림행정조직인 임업성이 1972년 12월 폐지되어 정무원 산하의 임업총국으로 전환된 점이나 이 시기에 추진된 6개년계획상에 조림목표량이 제시되지 않은 점, 그리고 工業化, 自然改造 5大事業의 추진 등

여타 부분에 대한 투자가 우선되었을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시기에는 과거에 비해 임정의 비중이나 임업투자가 상당히 위축되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다.

조림사업은 경제령 조성을 위한 有用速成樹種의 식재와 아울러 당시 심각하게 부족했던 식용유 등의 油脂生産 증대를 목적으로 하여 호두나무 油脂林造成을 남부 지역에서 활발히 추진하였다. 또한 조림관리를 철저히 하여 活着率과 성장율의 제고를 촉구하였는데 이로 보아 60년대까지의 조림성과에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이 시기에는 김일성의 지시에 의거 순환식 벌채방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게 되며, 원목의 생산증대와 노동자를 힘든 노동에서 해방한다는 기본과업에 따라 伐採集材, 運材作業의 기계화가 추진된 것으로 보이나 그 성과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다.

목재의 이용에 있어서도 임산화학의 발전 및 원목의 종합적 이용도 제고를 추진하였다고 하나 목삭판 및 목섬유판의 일부 생산량이 증대된 것 외에는 제조설비의 확대나 현대화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6) 제6단계 : 主體經濟 確立期 (1977~86)

이 시기에 북한은 인민경제의 주체화·현대화·과학화, 생산원가 인하, 절약운동 강화, 수송의 근대화, 대외무역증대 등을 기본과업으로 하여 1978년부터 제2차 7개년 계획을 추진하였으나, 전반적인 실적이 당초의 목표에 크게 미달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기간의 임정은 樹種更新을 위주로 한 조림사업의 강화를 통한 工業林의 확충, 순환식 벌채의 전면적 이행을 통한 원목생산

증대, 임산화학공업의 발전을 통한 목재의 종합적, 효과적 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조림목표량이 섬유제지림 170 천ha 이상, 油脂林 340 천ha 이상이라고 제시된 것과 이의 실행을 위해 군중적 조림운동을 계속 추진한다는 것 이외에는 구체적인 실천수단이 제시된 바도 없으며, 실적이나 성과에 대한 발표도 없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전반적으로 북한 경제가 더욱 어려워지면서 임업부문의 사업들도 상당부분 제대로 실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7) 제 7단계 : 社會主義 開放期 (1987~)

북한은 이 시기에 기본과업을 인민경제의 주체화·현대화·과학화, 기술혁신, 대외무역 및 경제협력 증대에 두고 전반적으로 계획목표를 2차 7개년계획에 비해 하향 책정 추진중에 있다. 이는 북한의 경제 상황이 더욱 어렵게 되었고, 이를 타개할 수 있는 뚜렷한 방법이 강구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 보여진다.

이 기간의 林政의 주요내용은 2차 7개년계획과 별다른 점을 발견할 수 없다. 종전計劃과 유사하게 速成經濟樹種의 조림을 통한 산림자원의 확충, 새 임지를 더 많이 개발하고 林產作業의 종합적 기계화 실현을 통한 원목 생산의 증대, 그리고 목재의 종합적, 효과적 이용을 강조하고 있다.

제 3 차 7개년계획상의 조림목표량은 1,500 천ha로써 연평균 200 천ha가 넘는 많은 물량이 제시되었으나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1980년 10월 노동당 제 6 차대회에서 10년 동안에 200만 ha의 조림을 실시키로 발표한 바 있으나 이후에 실적에 대한 일체의 언급이

없다가 1989년도에 이르러 언론보도를 통하여 時限의 제시도 없이 「가까운 앞날에」 200만 ha의 조림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으며, 최근의 중국 임업부 자료에 의하면, 1980년에 북한이 발표한 200만 ha의 조림계획량중 임업부 계통조직의 계획량이 80만 ha이었으나 최근까지 약 70% 만이 달성되었다고 한다.

한편 북한은 1992년 12월 11일에 최고인민회의에서 「산림법」을 채택하였다. 이 법은 5 장 47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채택사유는 「산림부문에서 이루어진 성과를 법적으로 공공히 하며 산림자원을 더욱 늘이고 효과적으로 이용하며 그에 대한 지도통제 사업을 개선」하는데 있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1장 산림법의 기본」, 「제 2 장 산림조성」, 「제3장 산림보호」, 「제 4 장 산림자원의 이용」의 주요내용들은 1977년에 제정한 「토지법」등에서 대부분 규정하고 있던 사항들로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다만, 이 법 제 5 장에서 「산림경영에 대한 지도통제」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 정무원의 산림사업 지도체계 강화, 국가계획기관, 지방정권기관 등으로 하여금 산림사업에 필요한 노력, 설비, 자재, 자금의 보장, 조림 및 육림 分擔義務가 주어진 기관, 기업소, 단체 등에 대한 책임과 의무 불이행시 처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은 조림 및 육림사업의 차질과 벌채, 산지개간 등 산림자원 이용질서의 문란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도통제를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여진다.